
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<b>보 도 자 료</b>			
	보도	2021. 2. 9.(화) 조간	배포	2021. 2. 8.(월)
담당부서	조사기획국	김충우 국장(3145-5550), 송동훈 팀장(3145-5560)		

**제 목 : 2020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**  
 -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총 1억 2,400만원 지급

**1 지급 현황**

-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(5명)를 대상으로 총 1억 2,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
-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,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하여 금감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적극 기여하였음

**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(지급연도 기준)**

(단위 : 건, 만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합 계
지급건수	5	5	3	2	5	20
포상금액	12,075	8,727	6,240	3,820	12,400	43,262
평균금액	2,415	1,745	2,080	1,910	2,480	2,163

## 2 지급 유형

- 최근 5년간(2016년~2020년)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하여 지급한 포상금은 총 20건, 4억 3,262만원으로
  -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(1억 7,975만원), 시세조종 6건(1억 7,477만원), 미공개정보 이용 4건(6,880만원) 順이며,
  - 2020년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\*은 3,240만원임

\* 최근 5년간 건별 최고 지급액 : 5,920만원(2016년도)

### 불공정거래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

(단위 : 만원, 건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합 계
시세조종	5,920 (1)	1,657 (1)	1,560 (1)	-	8,340 (3)	17,477 (6)
미 공개	2,420 (2)	2,480 (1)	-	1,980 (1)	-	6,880 (4)
부정거래	3,735 (2)	3,660 (2)	4,680 (2)	1,840 (1)	4,060 (2)	17,975 (9)
기 타	-	930 (1)	-	-	-	930 (1)
합 계	12,075 (5)	8,727 (5)	6,240 (3)	3,820 (2)	12,400 (5)	43,262 (20)

## 3 지급 기준

-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,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로서

- ①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,
- ② 일시·장소·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\*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
\* 주가변동, 공시자료,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

□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\*함

\* 붙임 : 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 개요」 참조

## 4 향후 계획

-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지능화·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
  -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
  - 인터넷, 전화,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임

### <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☞ 인터넷 :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(<http://www.cybercop.co.kr>)
- ☞ 전 화 : 금감원 콜센터 1332 (4번 → 3번)
- ☞ 우 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
조사기획국 시장정보분석팀 (우편번호 : 07321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**① 신고 기준**

-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인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는 **구체적인 위반사실**(위반행위자, 장소, 일시, 방법 등)을 적시하여 신고하여야 함

**② 신분 보호**

-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**비밀을 유지하여 신고자 보호에** 만전을 기하고 있음

**③ 지급 대상**

- 포상금은 시세조종, 미공개정보이용, 부정거래 등에 대하여 신고한 자로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**증거자료\***를 제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**적발 및 조치에 도움**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함

\* 주가변동, 공시자료,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

**④ 산정 기준**

-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**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** 각 등급별 **기준금액\***에 **기여율\*\***을 곱하여 산정함

\* 등급별 기준금액 : 1등급(20억원) ~ 10등급(5백만원)

\*\* 기여율 : 0 ~ 100%

- 포상금 지급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**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**에 실시함